

제298회 임시회
2011. 3. 17.(목)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1. 3. 17.(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나. 제출일자 : 2011년 2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11년 3월 3일
- 라. 상정일자 : 2011년 3월 10일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윤영현)

가. 제안이유

-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 역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892명 → 2,924명 (증32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402 → 1,430명 (증28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 : 1,378 → 1,382명 (증 4명)

※ 교육공무원(42명), 의회사무기구(70명)는 변동 없음.

- ②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안 제4조 별표3)

○ 총 계	2,892명	→	<u>2,924명</u> (증32명)
· 일반직	1,045명	→	<u>1,077명</u> (증32명)
- 4급	57명	→	58명 (증 1명)
- 5급 이하	978명	→	1,009명 (증 31명)
· 기능직	244명	→	<u>239명</u> (감 5명)
· 별정직	21명	→	<u>20명</u> (감 1명)
· 연구직	137명	→	<u>139명</u> (증 2명)
- 연구관	21명	→	22명 (증 1명)
- 연구사	116명	→	117명 (증 1명)
· 소방직	1,378명	→	<u>1,382명</u> (증 4명)
- 소방령이하	1,368명	→	1,372명 (증 4명)

※ 지도직(24명), 교육공무원(42명)은 변경사항 없음.

③ 한시정원 표기 (부칙)

- 세종시 업무 관련 2명 (행정5급1, 행정6급1) → 2012. 9.30한
- 구제역사후관리팀 6명 → 2012.12.31한
(행정5급1, 축산6급1, 토목6급1, 환경6급1, 행정7급1, 수의7급1)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가. 정원 조정 주요 내용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바이오밸리, MRO 사업, 구제역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집행기관의 정원을 1,402명에서 1,430명으로 28명을, 소방직 정원을 1,378명에서 1,382명으로 4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 정원의 총수를 2,892명에서 2,924명으로 32명 증원 조정하는 것임.

직급별 정원조정을 보면 일반직 4급이상이 57명에서 58명으로 1명 증원되고, 5급이하가 978명에서 1,009명으로 31명 증원되고, 기능직이 244명에서 239명으로 5명 감원되고, 별정직이 21명에서 20명으로 1명 감원되고, 연구직 연구관이 21명에서 22명으로 1명으로 연구직 연구사가 116명에서 117명으로 각각 1명 증원되고, 소방직 소방령 이하가 1,368명에서 1,372명으로 4명 증원되도록 조정되었음.

이 중 세종시 실무지원을 위한 인력 2명과 구제역사후관리 인력 6명 등 총 8명은 한시인력으로 추가된 것임.

나. 총액인건비와의 관계

2011년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충청북도 총액인건비는 전년대비 111억원이 증가한 1,948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명(일반직 7명, 소방직 4명) 증원이 반영된 금액임.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서 당초예산 인건비편성액 1,867억원을 차감하면 금년도 운용가능 총액인건비는 61억원 정도임.

금번 32명의 정원 증원으로 인해 소요될 인건비는 15억여원으로 이를 차감하고도 약 46억원 정도의 총액인건비 여유 금액이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금번 조례개정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및 바이오밸리, MRO사업, 구제역사후관리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각 호 외의 부분 중 “2,892명”을 “2,9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02명”을 “1,4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378명”을, “1,38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 정원) 본청의 정원 중 2명(행정5급1, 행정6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6명(행정5급1, 축산6급1, 토목6급1, 환경6급1, 행정7급1, 수의7급1)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 장 소
총 계	2,924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077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58	40	7	4	6	1
5급이하소계	1,009			-		
별정직 계	20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19			-		
연구직 계	139			-		
연구관	22	1		19	2	
연구사	117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1,382			-		
소방정	10	2		8		
소방령이하	1,372			-		
교육공무원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기능직 계	239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89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02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 원의 정원 : 1,378명 3. ~ 4. (생략)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9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행기관의 정원 : 1,430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 원의 정원 : 1,382명 3.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